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이제는 쉽고 빨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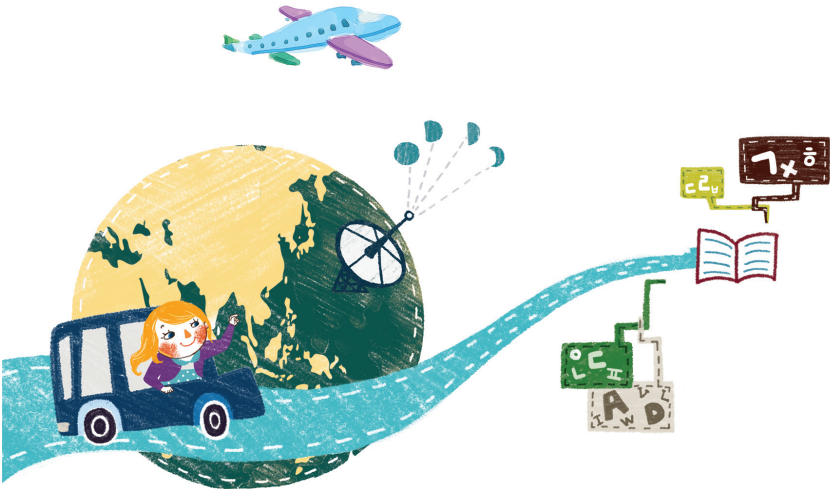
Employment Permi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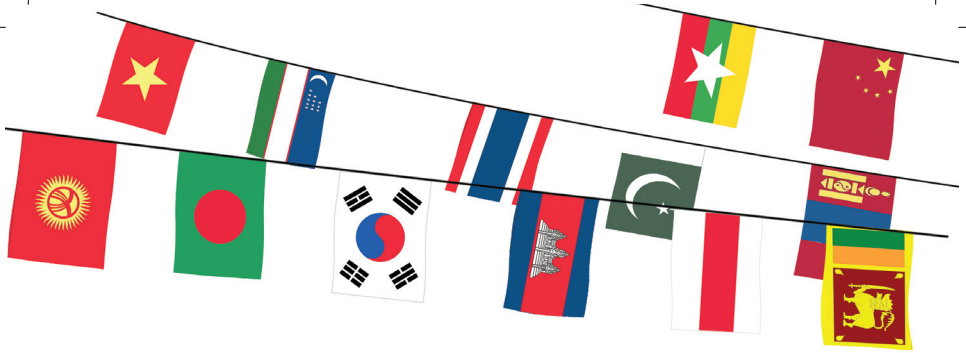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쉽고 빠른 ~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 Ⓣ 재입국 취업이 빨라집니다.
- Ⓣ 입국전 취업교육이 면제됩니다.
- Ⓣ 기존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2.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하려면



- 응시자격: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취업기간만료일까지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E-9)
- 준비서류: 한국어시험 응시원서, 귀국시 사용한 여권 사본
- 시행국가: 2012년 3월 현재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앞으로 다른 송출국가로 확대 예정)
- 시험장소: 송출국에 설치된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
- 시험주기: 분기별 1회 이상
- 시험안내: 송출국의 신문과 송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재입국 희망자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10문
10답



Q1

누가 응시할 수 있나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가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취업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
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0.1.1 이후 자진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Q2

근무하였던 업종에만
응시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근무하였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도
한국어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국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에는 동일한 업종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Q3

언제 어디서 보나요?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설치된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CBT)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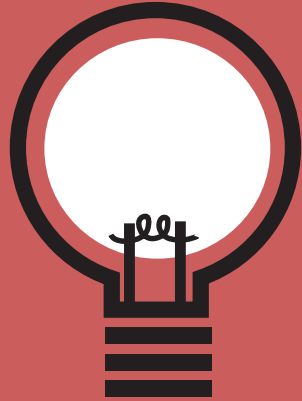


Q4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나요?

'12년 1분기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에서 특별 한국어시험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등 귀국자가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5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이 어렵진 않나요?

난이도는 일반한국어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합격률은 일반한국어시험보다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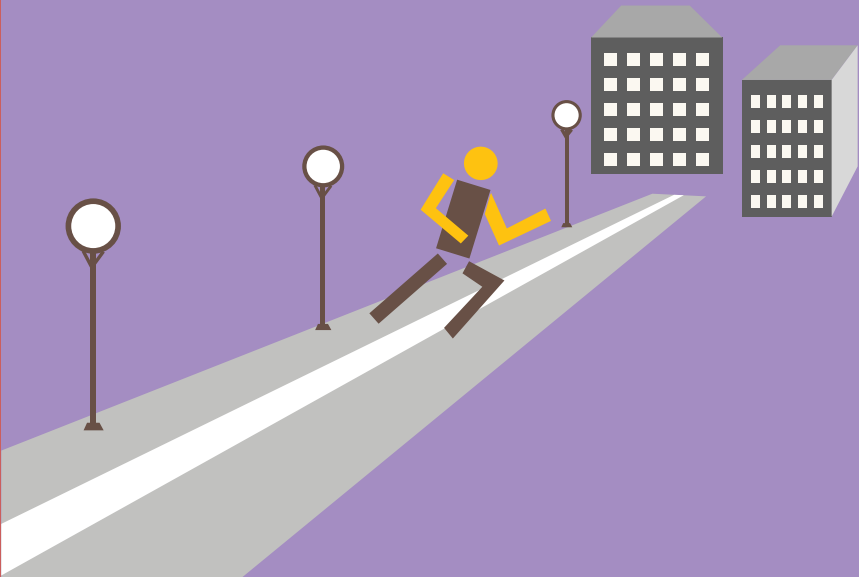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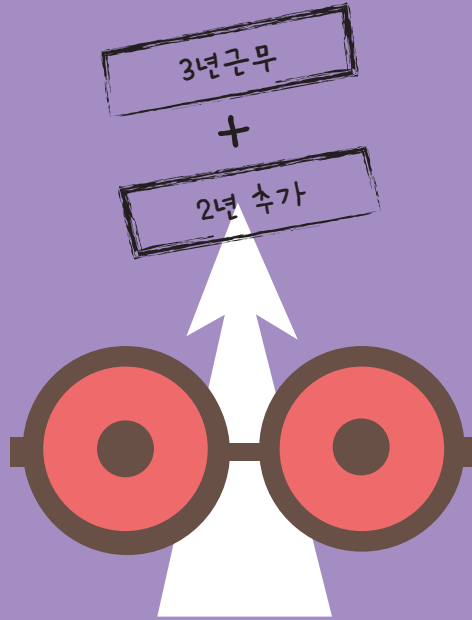
문제 구성은 공개문제 70%, 비공개문제 30%이며 공개
문제는 <http://epstopik.hrdkorea.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비공개문제 비율은 점차 확대할 예정)

Q6

합격하면 얼마나 빨리 재입국할 수 있나요?

입국전 취업교육이 면제되고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르면 귀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Q1 합격하면 얼마동안 일할 수 있나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재고용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에서 추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Q8

사업주가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를 다시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전에 마지막으로
고용하였던 사업주만 다시 고용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이전에 사업주가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후에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문자메세지와 전화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은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지정알선을
요청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알선 신청방법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의 ‘구인사항’→‘기타(경력 등)’란에 “재입국근로자
지정알선 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Q9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의 대상자는 ① 농축산업, 어업, 영세 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② 재고용 전·후에 사업장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③ 12.7.2. 이후에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자입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의 대상자는 3년간 근무하다가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취업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Q1 참조)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 허가를 받으면, 출국 후 3개월만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의 경우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재입국 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Q6 참조)

더욱 상세한 내용은 1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시험 정보는 어디서 볼 수 확인할 수 있나요?

송출국의 신문과 송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국어시험제도 합격자 입국절차도(지정알선 대상자)



특별한국어시험제도와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의 비교

구분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적용 대상자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자 (’10.1.1. 이후 귀국자에 한함)	①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2.7.2.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③ 사업장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자
실시대상 사업장	제한 없음	농축산업, 어업, 영세 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장에 한정
한국어시험	분기별 1회 이상 시행되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면제
취업교육	입국전 취업교육 면제	입국 전 · 후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제한기간	출국일로부터 6개월	출국일로부터 3개월
종전 사업장 재근무 여부	출국전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 가능	반드시 출국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해야함
사업주의 사전신청	불요	필요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불요
실시대상국가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이 설치된 송출국가 중 특별한국어시험에 동의한 국가 ※ ’12년1/4분기 현재, 태국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에서 실시	제한 없음
시행시기	’11.12월, 태국 · 베트남 시행 ’12년 1분기 태국 · 베트남 및 우즈베크 · 파키스탄 · 인니 시행 ※그 외 송출국은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 설치 후 시행할 예정	’12. 7. 2.부터 전면 시행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http://www.moel.go.kr>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